

(4) 대국민 지역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

- 도서관은 법률의 핵심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법률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구성이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공간구성이 필요함
- 또한 판결 정보나 법률 관련 정보 이용 시 필요한 디지털 전자기기 설비 및 비품, 기기의 도입, 도서관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률자료를 활용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기능:**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사 자료등을 전시 및 홍보하고, 법률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며, 법률 교육 워크숍을 법조인 및 법학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복합문화공간의로서의 기능:** 법률 지식 문화 대중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대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법률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국민과 법률 관련 기관 및 교육 기관 종사자, 센터의 근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법률 지식 접근성을 확대
- 또한, 법률문화예술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법과 예술을 융합한 전시회같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법률 문화의 확산과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Ⅲ. 역할 및 기능에 적합한 센터 명칭 선정

1.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주요 특징

-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문화예술공간으로서 국민들에게 법률 지식과 문화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법률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법률 지식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때 법률 지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누구나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알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원도서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법률문화예술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것과 동시에 센터와 관련된 타 기관 및 시설의 이용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법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융복합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시사하여 법률과 예술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음
-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표 Ⅲ-4〉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제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사 자료 등을 전시 및 홍보하여 법률 지식 접근성을 확대 ○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사법과 예술을 융합한 전시회 개최 ○ 법조인 및 법학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 교육 워크숍을 개최
수집하고 있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연구논문, 학술지, 보고서와 같은 문헌 ○ 해외 학술논문 및 법률 관련 단행본 ○ 법률 관련 잡지, 신문 등 정기간행물
대상 독자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법률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 ○ 법률 관련 기관 및 교육 기관 종사자 ○ 센터와 밀접한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

2.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센터의 명칭 제안

- 센터의 주요 특징을 기반으로 센터 명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Ⅲ-5〉 센터 명칭 목록

명칭	내용
법률·재판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정보의 확산 및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복합문화공간 조성, 다양한 법문화 및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열린법률정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법률 전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임을 의미 ○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같이 하기 위해 도서관이나 센터라는 명칭 대신 공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함께 하는 공간(건물)임을 강조
법률문화예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가 법률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공간임을 강조 ○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고 법률문화의 가치를 느끼게 함

명칭	내용
법률 정보교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가 다양한 법률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 ○ 또한 법률 관련 정보와 의견의 교류를 장려함을 의미
사법정보 활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가 사법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국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 ○ 법률 관련 자료와 판례 등을 활용하여 법률 상담, 연구,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
법률 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가 법률문화와 관련된 자료와 이벤트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법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을 강조 ○ 법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제2절 법률 문화 허브 기관 기능을 위한 운영 방안



I. 자료의 수집

구분	내용
수집 대상 및 범위	○ 국내 자료에 구입, 수증, 교환, 소급 법률자료에 복사영인 제작, 외국 법률정보의 구입 및 라이선스 확보, 인터넷 정보자원의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수집
자료 구입 방법	○ 국내 자료의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소급 자료의 복사영인 제작, 인터넷 정보자원의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적용하여 국가장서를 개발
수집단계와 우선순위	○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함
자료구입 개발	○ 국내 자료의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소급자료의 복사·영인 제작, 인터넷 정보자원의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적용하여 장서를 개발
자료유형별 개발	○ 인쇄자료의 경우 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으로 구분하며, 비인쇄자료는 비도서와 전자자료로 대별함
온라인 자료의 전략적 수집	○ 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법률 관련 웹사이트는 최우선으로 조사 및 수집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전자책은 콘텐츠 유형, 선호도, 영구 접속 여부, 플랫폼 사용성, 인쇄 및 다운로드 옵션, 전자책 접근에 대한 법률 커뮤니티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집

- 오늘날 도서관은 정보의 축적, 제공 기능을 넘어 문화, 예술과 교육이 융화된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률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를 제안함에 있어, 국민사법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자료의 집약적 수집, 정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도서관 특성에 따른 자료 수집 사례

가.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

며, 국민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장서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입, 납본, 기증,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1) 목적

- 자료수집정책은 국회도서관 이용자인 국회와 국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료수집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의회도서관 및 국가도서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장서는 대한민국의 지적 문화유산을 증장기적으로 보존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와 지성을 전승하는 중대한 지적 실체임
- 따라서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정책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일관성과 견고함을 유지함

- 국회와 국민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 자료수집 실현
-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정책의 명문화를 통해 체계적인 장서구성 도모
- 거시적이며, 증장기적인 국회도서관 자료수집정책 제시

(2) 자료수집 범위

- 입법지원자료: 의회자료, 법률자료, 공공정책자료(국내·외 정부간행물 및 연구기관 발간자료, 국제기구자료)
- 국내자료: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정기간행물, 신문), 회색문헌(세미나자료, 팸플릿자료, 학위논문), 비도서(마이크로 형태자료, 지도 등)
- 국외자료: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간생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발행지를 기준으로 적용·수집되는 대상은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생산된 자료
- 특성화자료: 독도자료, 통일자료, 영토자료
- 전자자료: 온라인 전자자료, 오프라인 전자자료, 디지털 파일
- 기타자료: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모든 자료

(3) 기본방향

- 국회도서관의 이용자인 국회와 국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을 추진

〈표 Ⅲ-6〉 자료수집 기본방향

구분	내용
1. 국회도서관 사명 중심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 ○ 자료수집은 입법활동 지원과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도서관의 핵심적 사명을 지지하는 장서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국회와 국민의 정보요구를 지원하는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도서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의회자료, 법률자료, 공공정책자료를 핵심자료로 정의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수집 ○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의 정보활용 및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적인 장서를 개발
3. 국회도서관의 특성화 자료를 장기적으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도서관은 입법활동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지원에 적합한 장서구성을 원칙으로 함 ○ 국회도서관이 집중적으로 수집할 중점수집 분야를 정의하고 이를 특성화 장서로서 장기적으로 개발
4. 정보환경 변화와 정보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정보환경 변화와 정보매체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자료수집정책을 정기적으로 갱신·유지
5. 장서수집방법의 확장과 변화를 유연하게 인정하는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정책은 자료유형별 수집에 의거한 전통적 장서개발 구분을 준수하되, 전자자료의 빠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전자자료개발정책을 별도로 구성
6. 각 자료별 장서수집기준과 주제별, 언어별 장서수준을 고려하는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수준 및 미래의 입수예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장서수집기준과 주제별·언어별 장서수준을 정의하여 국회도서관의 장서특성을 강조하고, 자료수집의 효율화

(4) 수집방법

〈표 Ⅲ-7〉 국회도서관 자료수집 방법

구분	내용
1. 납본	○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는 자료는 납본수집을 원칙으로 함
2. 구입	○ 국회도서관은 입법활동 지원과 국민의 지적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입방식으로 수집한다. 주요 구입대상자료는 의원요구자료, 외국 학술자료, 기타 구입희망자료 등

구분	내용
3. 방문수집	○ 국회 내 상임·특별위원회, 국회의원실 및 입법지원조직 등 국회 내부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와 국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에 관련된 자료들을 현장 방문하여 수집
4. 기증	○ 전현직 국회의원, 의회 및 그 밖에 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법인 및 단체에서 기증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에 따라 수증
5. 국제교환	○ 세계 각국의 의회도서관 또는 국가도서관 등과의 교환을 통하여 해당국의 의회자료, 정부간행물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
6. 기탁	○ 국회도서관이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제기구의 발간자료는 기탁으로 수집
7. 복제수집	○ 도서관 수집 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행된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품질절판, 또는 희귀본, 해외소재 문서 등과 같이 원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전자화된 매체를 수집

(5) 자료수집 수준

〈표 III-8〉 국회도서관 자료수집 수준

장서수집기호	내용
0	○ 수집 제외 : 의도적으로 수집에서 제외함
1	○ 최소 수집 : 거의 선택하지 않음
2	○ 선택적 수집 : 평가하고 선별하여 수집
3	○ 적극적 수집 : 지식전달 및 유지에 적합하도록 적극적 수집
4	○ 포괄적 수집 : 해당 자료를 가능한 포괄적으로 수집
5	○ 망라적 수준 : 전문적인 장서 구성을 위해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6) 주제별 수준

-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정 주제의 상대적인 규모와 성격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표준화된 RLG(The Research Libraries Group) 컨스펙터스의 6 단계 장서수준 기호를 사용
- 국회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전 주제분야를 망라하여 수집하며, 주제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언어,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DDC 23판) 구분
- 국내자료는 전 주제분야의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자료는 사회과학분야 위주로 수집하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책자료는 주제 범위를 넓혀 수집

(7) 언어별 수준

- 외국자료 수집에 있어서 언어별 우선순위는 기존의 장서구성 및 이용현황의 변화를 기초로 결정하며,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순서의 비중으로 수집
- 주요 언어자료 이외에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등 기타 언어자료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집하며, 국제교환의 경우 국회의 미래지향적인 외교역량 강화에 따라 언어 해독 여부의 범위를 초월하여 수집할 수 있음

(8) 매체별 수준

- 국회도서관의 자료는 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비도서, 전자자료로 구분
- 동일 자료가 두 가지 이상의 매체로 동시에 발행될 때에는 인쇄매체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

(9) 중점 수집자료

- 국회도서관 자료수집의 중점분야는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도서관 기능 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우선하며, 이를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로 구분
- 핵심자료는 국회도서관에서 중장기적으로 국회도서관의 내부 장서 중 다른 분야와 비교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집서해야 할 장서를 의미하며, 특성화자료는 타도서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특화된 고유의 장서를 의미
- 국회도서관의 핵심자료는 입법지원자료임
- 입법지원자료는 의회자료, 법률자료, 공공정책자료로 구성

〈표 Ⅲ-9〉 중점 수집자료

자료 유형	내용
의회자료	○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발간되거나, 의회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
법률자료	○ 법률의 제정(입법자료), 집행(규정, 결정자료), 해석재판(판결자료) 과정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법률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참고가 되는 모든 관련 자료
공공정책자료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 국민 다수나 국가미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전 분야의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산, 유통시키는 자료

(10) 입법지원자료

- 입법지원자료는 국회도서관이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핵심자료로 국내·외에서 발간·생산된 의회자료, 법률자료 및 공공정책자료를 포함

〈표 Ⅲ-10〉 입법지원자료 수집 방법

구분		범위
의회자료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실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간한 자료를 수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보고서, 정책자료집, 연구용역보고서, 자료집 - 국회의회의록 - 정당자료 - 국회의원저서 ○ 위원회에서 생산하는 각종 보고서 및 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자료를 수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심사과정에서 생산하는 각종 보고서 -국정감사·조사 관련하여 생산하는 각종 보고서 및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업무현황, 요구자료, 서면답변서, 결과보고서 등) 예·결산과 관련하여 생산하는 각종 보고서와 소관부처에서 제출한 자료(개요, 각목명세서, 사업설명자료)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법」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따라 국회에 설치된 각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한 자료를 수집 ○ 의회관련기관의 입법지원 연구자료 ○ 지방의회회의록 및 의정백서 ○ 주요국의 의회회의록 및 입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관련자료,국제의회연맹(IPU), 아시아태평양 국회의원연맹(APPU) 발간물 및 관련참고자료를 수집
	수집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의회자료: 망라적 수집(5) ○ 외국 의회자료: 포괄적 수집(4)
법률자료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료는 의미와 유형에 따라 1차 법률자료(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와 2차 법률자료(1차 법률자료에 대한 주석, 논평, 색인 등과 법률정보 이론 및 연구자료) 전체를 수집 대상으로 함 ○ 국내에서 출판된 법률자료는 원칙적으로 납본제도를 활용하여 모든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자료를 수집 ○ 전 세계 모든 국가의 1차 법률자료를 수집 ○ 주요국가(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의 법률자료는 인쇄자료와 전자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그 외의 국가는 수집 가능한 자료를 우선 수집
	수집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출판된 법률자료: 망라적 수집(5)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의 법률자료: 망라적 수집(5) ○ OECD국가 및 신흥개발 국가의 법률자료: 적극적 수집(3)

구분		범위
공공정책 자료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공기관이 발행한 정부간행물, 주요국 국가기관이 발행한 정부간행물 - 연감/백서류, 통계자료, 사업보고서, 법률자료, 업무편람, 연구보고서, 회의자료, 목록류 ○ 인터넷자료: 정부간행물, 정부정책자료,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법률번역자료, 보도자료(입법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 등 ○ 국내 연구기관의 정책연구자료 및 보도자료 등 ○ 주요 외국 싱크탱크 발간자료 ○ 국회도서관이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제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 발간자료
	수집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부간행물: 망라적 수집(5) ○ 미국 및 일본의 정부간행물: 포괄적 수집(4) ○ 중국 및 영어권 국가의 정부간행물은 적극적으로 수집(2) ○ 국내 싱크탱크 발간자료는 망라적 수준(5)으로 수집하고 외국 주요 싱크탱크 발간자료는 포괄적 수집(4) ○ 남·북한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자료는 망라적 수집(5), 기타 국제기구자료는 포괄적 수집(4)

(11) 국내자료

- 국내에서 발간생산된 자료는 언어에 관계없이 전 분야를 수집
- 국내자료는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세미나자료, 팸플릿자료, 학위논문), 비도서를 포함

〈표 III-11〉 국내자료 수집 방법

구분		범위
일반도서	범위	○ 일반도서는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주제의 학문분야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법활동 지원의 핵심자료인 국내의 입법관련 자료와 정책자료 등을 우선 수집
	수집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도서관의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 망라적 수집(5) ○ 입법활동 및 연구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장서: 망라적 수집(5)
참고도서	범위	○ 우선적인 수집자료 유형은 정부간행물과 공공저작물의 출판물 중 연감/백서류와 통계류, 편람, 목록
	수집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입법관련 참고도서와 정책관련 참고도서: 망라적 수집(5) ○ 기타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의 참고도서: 포괄적 수집(4)
연속간행물	범위	○ 공공기관 및 타 발행 정기간행물, 법학분야 정책관련 정보 분야 우선 수집
	수집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정기간행물: 망라적 수집(5) ○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가 발행한 정기간행물: 포괄적 수집(4)

구분		범위
학위논문	범위	○ 국내 학위논문은 납본 제도에 근거하여 인쇄매체 및 디지털파일을 무상납본으로 수집, 외국대학 취득 학위 논문은 한국연구재단과 협력하여 수집
	수집수준	○ 국내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망라적 수집(5) ○ 한국인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논문: 포괄적 수집(4)
비도서	범위	○ 의회법령자료, 외교문서, 귀중, 고잡지, 신문 등의 자료를 대상 ○ 의회자료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수집수준	○ 마이크로폼 자료: 선택적 수집(2) ○ 독도영유권 관련 지도: 선택적 수집(2)

(12) 국외자료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간·생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발행지를 기준으로 함

〈표 III-12〉 국외자료 수집 방법

구분		범위
일반도서	범위	○ 의회 및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자료, 학술적 조사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수집수준	○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 망라적 수집(5) ○ 입법활동 및 연구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장서: 포괄적 수집(4) ○ 일반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의 자료: 적극적 수집(3) ○ 주제별 개론서 등: 선택적 수집(2)
참고도서	범위	○ 사전, 백과사전, 서지, 통계, 연감, 백서, 목록, 색인 등의 참고자료는 사용가능성과 출판사의 명성 등을 고려하며, 기관정보 등의 리스트는 선별·입수
	수집수준	○ 주요국의 입법활동 및 연구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참고도서: 적극적 수집(3) ○ 기타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의 참고도서: 선택적 수집(2)
연속간행물	범위	○ 의회도서관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활동과 국정심의회에 필요한 주제분야의 핵심저널을 우선 수집
	수집수준	○ 사회과학 분야의 핵심저널: 적극적 수집(3) ○ 사회과학 분야의 기타 저널 및 인문과학, 총류: 선택적 수집(2)
비도서	범위	○ 국외에서 생산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우선수집하며, 그 외에 의회법령자료, 정부간행물 외교문서, 국제통계자료, 귀중서, 신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등의 자료 중 인쇄자료나 전자자료로 생산되지 않는 자료를 우선 수집
	수집수준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의회법령자료, 정부간행물, 국제통계자료, 귀중서: 선택적 수집(2) ○ 신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최소정보수준(1)

(13) 전자자료

- 전자자료는 납본을 통해 각 기관이 발행한 자료를 수집하며 온라인자료는 구입 또는 기증을 통해 수집
- 전자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집하며 저작권에 따른 자료의 이용범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및 이용편의성이 높은 자료는 우선 수집

〈표 Ⅲ-13〉 전자자료 수집 방법

구분		범위
전자책	범위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수집하며, 매체의 유형에 따라 중복수집이 가능
	수집수준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전자책: 적극적 수집(3) ○ 인문사회과학분야 및 다양한 주제의 전자책·오디오퓌: 선택적 수집(2)
전자저널	범위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집하며, 최신성 이용가능성을 고려
	수집수준	○ 전자저널: 선택적 수집(2)
Web DB	범위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DB를 중심으로 수집
	수집수준	○ Web DB: 선택적 수집(2)
오프라인 전자자료	범위	○ 정치·시사주제 자료로 희소성이 있는 자료, 사회적·정치적 적시성이 있는 자료, 사회 모습을 보도·기록한 자료를 우선 수집하며, 정치사, 정치체제, 국제정치, 의회자료, 사회문제, 다큐멘터리, 신문자료, 양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자료 등의 자료를 포함
	수집수준	○ 오프라인 전자자료 납본: 포괄적 수집(4) ○ 오프라인 전자자료 구입: 선택적 수집(2)
디지털파일	범위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디지털파일을 우선 수집하며, 국내 발간 학위논문의 디지털파일을 납본으로 수집
	수집수준	○ 국내 디지털파일: 망라적 수집(5) ○ 외국 디지털파일: 적극적 수집(3)

나. 헌법재판소 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양질의 서비스 및 재판에 위해 다양한 수집 방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판례심의소위원회 및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한 민주적인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1) 목적

- 헌법재판 및 관련 연구의 신속한 지원과 대국민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헌법재판 및 심판사건 관련 법률전문자료 충당을 통한 각종 연구 지원

(2)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구성

-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도서관의 자료 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표 III-14〉 심의위원회 규칙

구분	법률
판례심의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 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15〉 ○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자료선정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 수집 대상자료의 선정을 위해 어권별 자료선정위원을 둔다. ② 자료선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료선정위원은 선정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15]

(3) 자료 구입사업

- 헌법재판소 도서관 도서정보과에서 주기적으로 자료 구입사업을 진행
- 사업을 통해 헌법재판 연구업무의 적시 지원과 대국민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질의 도서관 법률자료 확충 기여
- 법률자문자료 및 민간자료 등 수집이 어려운 자료 등 확충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표 III-15〉 헌법재판소 도서관 자료 구입 사업

구분	내용
대상	○ 헌법재판 및 심판사건 관련 법률전문자료 등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 법령집, 판례집 ○ 헌법, 행정법 등 국내·외 법률분야 신간자료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 관련 일반자료 ○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법률자료 및 일반자료 등
조직 업무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자료주문 및 납품검수 - MARC 데이터, 도서 장비작업 등 검수 - 사업관리 및 감독 ○ 자료선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대상자료 심의 및 선정

(4) 자료기증

- 기증을 통해 이용자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하며, 헌법재판과 관련된 자료 수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계 구성

〈표 III-16〉 헌법재판소 도서관 자료기증

구분	내용
기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공법전문 도서관으로서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 연구활동에 가치있는 국내·외 공법 자료를 수집 ○ 기증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재기증, 재활용, 폐기 등으로 처리
기증 제외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 자체 발간자료, 일반 정기간행물 ○ 도서관에 소장 중인 복본자료 ○ 파손, 오손 등 상태 불량 ○ 비밀이 요구되는 대외비 자료 및 정치적 종교적 이념 편향 자료
기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도서관

- 법학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 제공에 기여
- 법학전문대학원 및 본교 소식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연구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내규를 규정

(1) 목적

- 업무의 표준화, 이용자 서비스, 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중앙도서관 및 그 산하 분관과 공유 체제를 유지
- 법학 관련 연구 및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확충

(2) 법학도서관 운영위원회

- 법학도서관의 자료 수집, 정리, 폐기 등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계획 및 장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

〈표 III-17〉 법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구분	내규
자료의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도서관은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법학 학문연구와 교육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여야 함 ○ 법학도서관의 자료수집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함
자료선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학도서관에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자료의 구분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자료,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고서 및 귀중본, 학위논문, 비도서, 특수자료, 기타 자료 등으로 구성

(3) 기증자료 처리

- 법학 관련 학술연구에 필요한 개인 및 기관의 자료 기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교 이용자의 연구, 교육, 학습을 지원함을 물론 국내·외 단체의 재기증을 통해 지식정보 나눔 등 지원

2. 자료 수집

가. 자료 수집 대상 및 범위

- 수집방법별 개발은 국내 자료의 구입, 수증, 교환, 소급 법률자료에 복사영인 제작, 외국 법률정보의 구입 및 라이선스 확보, 인터넷 정보자원의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수집함

- 자료유형별 개발은 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웹DB(전자잡지, 전자도서 포함), 디지털 파일 등으로 구분하고 법마루 도서에 한하여 일반도서, 참고자료, 대중잡지(신문 포함), 시청각자료 등을 대상으로 수집함
- 수록매체별 개발은 인쇄자료, 시청각 등 특수자료, 전자자료(상용 서지·원문 DB와 패키지형 전자잡지, 전자책, 디지털 파일)를 대상으로 함
- 언어별 및 생산주체별 개발은 법률정보에 국한하며, 전자는 영어권,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 한자권, 북한, 기타 등의 자료를, 후자는 국외 법무부, 대법원 및 연방법원, 연방행정법원, 국제기구, 대륙별 국가연합체, 주요 국제 민간기구, 주요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단체·연구기관의 법률과 관련된 공공간행물, 보고서, 법령·통계자료, 학술대회자료, 박사논문 등을 대상으로 함
- 주제별 개발은 법률도서와 법률 인접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하며, 일반도서는 사회과학, 인문예술, 문학, 역사 등을 대상으로 함

나. 자료 구입 방법

법원도서관은 국내 자료의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소급 자료의 복사·영인 제작, 인터넷 정보자원의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적용하여 국가장서를 개발함

- ① 구입: 법원도서관의 주 장서 개발 방법으로, 국내·외 자료를 구입방식으로 수집하며,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구입
 - ② 수증: 비매품자료 등을 수집하며, 장서개발지침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나 복본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교환: 국내·외 기관, 단체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수집 할 수 있음
 - ④ 납본: 각급법원 등이 간행물(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법원도서관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발간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간행물 10부와 간행물의 내용을 수록한 전자파일을 법원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함
-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는 국가 대표 법률 전문도서관이자, 대국민 서비스를 중점으로 운영하는 법원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한 납본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⑤ 영인·복제: 구입, 수증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 법률자료 중에서 원형보존이 요구되거나 내용적 가치가 우수함에도 파오손이 심한 경우에는 복사·영인본으로 제작 또는 변환
- ⑥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탑재된 법률정보 중 회색문헌에 적용하며, 개발지침에 따라 수집

다. 수집단계와 우선순위

-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함
 - 보존수집(Archiving Collection): 법원도서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자료의 완벽한 보존을 전제로 이용의 편의성과 후세전송의 안전성을 확보함. 따라서 장서를 개발할 때는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 등을 불문하고 지식정보의 부존자원화 및 선진국의 저작권 강화전략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보존기능을 가장 중시하여 1차 자료 중심의 실물 수집을 극대화함
 - 완전수집(Perfect Collection): 법원도서관은 정보자료 중심의 국가지식문화 유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특히 법률과 관련한 자료 수집의 완전성을 지향함
 - 혼합수집(Hybrid Collection): 법원도서관은 방대한 분량의 아날로그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있으나 인터넷 정보유통이 보편화 됨에 따라 디지털정보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장서개발의 중심은 인쇄자료에 두되,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라이선스 비용, 접근검색의 편의성, 요구도와 이용 가능성, 보존력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반자료와 온라인자료를 혼합하여 소장기능과 접근 패러다임의 균형을 추구함
 - 보완수집(Back-up Collection): 법원도서관이 구입, 수증, 교환, 납본 등의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완전하게 수집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자료의 유형이나 주제에 따라서는 미납본 자료의 확인과 구입, 연속간행물 결호의 보충, 훼손자료의 수선·복원 교체·매체변환 등을 통하여 보완함
 - 분담수집(Sharing Collection): 법원도서관은 국가수준의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법률자료, 고가자료, 회색문헌, 온라인자료 등을 분담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예산지출의 효율성 및 자료 내용의 중복성을 최소화함

라. 자료구입 개발지침

국내 자료의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소급자료의 복사·영인 제작, 인터넷 정보자원의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적용하여 장서를 개발

(1) 구입

-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는 법률 지원을 하는 동시에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를 구입방식으로 수집
- 구입은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에 적용하되, 법률자료에 방점을 둠
- 주요 대상자료는 재판사무지원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법률도서, 학술지, 유명 저자의 논문 등으로 구성하며 기타 일반 이용자를 위한 교육, 문화, 교양, 오락 등의 자료 등을 수집

(2) 수증

- 수증에 의한 수집은 주로 법률자료에 적용하되, 국내 법률정보 수집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수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정부부처 자료실, 국책연구기관, 전문도서관, 법률 관련 유관기관 등이 보존하는 법률자료는 대량 기증 또는 관리위탁 방식으로 생산하는 자료를 수집·보존함
- 전·현직 판사, 법조 직역 종사자(변호사, 교수 등) 및 그 밖에 사회발전에 공헌한 개인·법인 및 단체에서 기증의사를 표시하면 절차에 따라 수증함
- 미소장 법률자료(도서, 연구보고서, 연속간행물, 공공간행물,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료 등)는 보존가치 및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증을 요청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영인·복제 방식으로 수집함
- 다만, 기증하는 자료가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수증을 거절하거나 등록하지 않음

(3) 교환

- 국내·외 법률기관, 단체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교환처는 법원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도서관장이 정함
- 국외의 경우, 공공간행물, 학술자료, 법률 관련 자료 등(비도서 포함)은 각국의 주요 국가도서관과 국외 대법원, 연방법원, 연방행정법원 및 법무부 등과 자료교환 협정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

(4) 납본

- 법원도서관은 각급법원에서 발간한 간행물, 출판물을 대상으로 납본을 받음
- 현재 법원도서관 규정상 법원 내부에 한하여 납본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법원도서관 규칙 제14조에서는 사법행정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발간일로부터 1월 이내 간행물 10부와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전자파일을 법원도서관에 납본해야 함
- 납본자료의 목적과 활용, 공간의 효율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납본 부수는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수량은 납본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법원도서관장이 정함
- 다만, 외부 자료 납본을 추진할 경우 그 예에 따름

(5) 영인·복제

-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 법률자료 중에서 원형보존이 요구되거나 내용적 가치가 우수함에도 파오손이 심한 경우에는 복사·영인본으로 제작 또는 변환함

마. 자료유형별 개발지침

- 인쇄자료의 경우 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으로 구분하였으며, 비인쇄자료는 비도서와 전자자료로 대별함

〈표 Ⅲ-18〉 매체별 자료유형 구분 기준

구분	매체 및 유형	내용	
인쇄 자료	도서	단행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전문서적, 학술지, 학위논문 등 단행본 형태의 인쇄자료 법률 인접분야 및 일반 교양서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는 일반장서개발 지침을 따름
		참고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전, 법률용어사전, 어학사전, 백과사전, 연감, 통계서, 편람 등과 같이 정보를 직접 제공해 주는 정보원과 서지, 목록, 색인, 초록 등과 같이 정보의 소재를 지시해 주거나 한 문헌의 존재 유무를 알려 주는 서지적 정보원
		학위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사 혹은 석사과정을 이수한 후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제출인준된 연구논문, 기타 인접분야 학위 논문 등
	연속간행물	정기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간행물은 동일 지명으로 보통 연간 1회 이상 일정한 간격으로 발행되며 종간을 계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인쇄자료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국내·외 뉴스를 비롯한 각종 시사, 정보, 지식, 오락 등 다양한 사건과 소식을 전달해주는 자료
	회색문헌	세미나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및 학술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다뤄진 내용을 정리발간한 자료
팸플릿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표지를 제외하고 5 ~ 48쪽 정도 분량으로 구성된 소책자 	
비인쇄 자료	비도서	마이크로폼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름이나 피시형태로 된 모든 마이크로 복제 자료를 통칭
		시청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자료(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등) 및 청각자료(음반, 카세트테이프 등), 실물 또는 모형자료(지구仪, 표본 등), 지도자료를 포괄
	전자자료	오프라인 전자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콘텐츠를 물리적 매체(디스켓, CD-ROM, DVD 등)에 고정시킨 형태의 전자자료로서 패키지형 전자자료를 통칭
		디지털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파일은 파일단위로 수집하여 법원도서관의 저장소에 저장한 자료를 의미하며, 법원도서관이 구입하거나 외부로부터 이메일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수집한 파일,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자료를 통칭
		온라인 전자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자료(Web-DB, 전자저널, 전자책 등)로서 무료로 또는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비용을 지불하여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바. 온라인 자료의 전략적 수집

- 온라인에 퍼져있는 방대한 양의 온라인 자료들을 전략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면 지식 정보 생태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존재

- 자료 유형과 제공처에 따른 중요도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의 자료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음
- 시간이 지나면 구할 수 없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회색 문헌, 쉽게 구할 수 없는 심층 웹에 존재하는 고품질의 자료, 내용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장서를 중요도가 높은 자료로 선별하고 우선적으로 수집, 서비스하도록 개발하여 법률자료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음
- 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법률 관련 웹사이트는 최우선으로 조사 및 수집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전자책은 콘텐츠 유형, 선호도, 영구 접속 여부, 플랫폼 사용성, 인쇄 및 다운로드 옵션, 전자책 접근에 대한 법률 커뮤니티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집
- 웹에 퍼져있는 인터넷 자료들은 권위있는 자료인지, 정확성이 있는지, 최신의 자료인지, 자료가 체계적인 구조로 짜여 있는지, 자료의 목적과 이용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자료인지, 자료가 심미적으로 보기 좋게 되어 있는지, 링크사항은 어떤지를 고려하여 최우선 자료를 선정, 수집

II. 법률 문화 확산을 위한 접근성 확대 방안

-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례를 전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사례를 조사하되, 복합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조사함
- 특히, 법률 관련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국내·외적으로 조사

1. 전문도서관 접근성 확대 사례

가. 국회도서관

(1) 기관 개요 및 선정 이유

- 국회도서관은 1952년 개관하여 2022년에 개관 7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3억 6천만 면에 이르는 원문DB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입법·정책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대국민 지식정보 지원기관으로서 국내·외에서 발행된 방대한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음

기관	한글	국회도서관	
	영문	National Assembly Library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s://www.nanet.go.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시설 (39594m ²)	B1F: 강당, 소회의실, 매점, 식당	
		1F: 대출대, 국가전략정보센터, 빅데이터연구센터, 복사실, 어린이방, 장애인석, 상설전시실	
		2F: 사회과학자료실, 법률정보센터	
		3F(의정관): 디지털정보센터, 독도·통일자료실	
		3F: 인문·자연과학자료실	
4F: 입법조사처			
	5F: 의원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서비스 형태	온라인(한글), 오프라인		
특이사항	국립도서관, 의정활동지원기관		

(2) 국회도서관 접근성 서비스 현황

〈표 III-19〉 국회도서관 접근성 서비스

구분	내용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정보조사회담, 팩트북 및 발간자료 배포, 공공정책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전문가정보 데이터베이스,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입법지식서비스, 법률정보조사회담, 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DB구축 및 서비스, 국회전자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 시스템(Argos),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 학술연구자정보 공유사업(K-Scholar), 국회기록정보서비스, 정기간행물기사색인,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국회도서관 웹진
정보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부산도서관) 전시실 운영, 지식문화프로그램 운영, '들락날락'어린이 디지털 교육 운영, 참관 운영
지역사회와의 협력(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지원사업, 법률정보기관 교류협력사업, 지방의회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실무실습, 학술정보상호협력사업, 지식공유사업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자료 배포, 동영상 콘텐츠 제작(국회도서관 발간물, 국회도서관 주요 행사, 온라인 생중계), 대학생 SNS 서포터즈

(3)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 국회도서관 안내 책자에 따른 국회도서관의 주요서비스 중 의회정보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국회도서관에서는 국민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의회정보서비스로 의회정보조사회답, 국외정보 번역, 팩트북 및 발간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III-20〉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구분	내용	
의 회 정 보 서 비 스	의회정보조사회답	○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실정보 요청에 대한 회답서비스 ○ 국내·외 정책현황, 사례 및 통계 등 입법 관련 사실정보를 조사검색하여 제공하고, 주요 국가별 해외자료조사관이 외국의 제도 및 정책사례를 조사번역하여 제공
	국외정보 번역	○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이 요청한 외국의 주요 정책제도현안 등에 대한 참고자료 번역 서비스
	팩트북및 발간 자료	○ 팩트북(Fact Book)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자료집으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행정부처, 언론기관 등에 배포
	공공정책정보	○ 국내·외 정부공공기관 및 싱크탱크 기관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책 및 현안정보, 학술자료, 연구자료 등의 정보 제공
	국회의원 정책자료	○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동영상 자료 등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 제공
	전문가 정보DB	○ 국회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의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국회 입법활동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적정보 제공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 지방의회의 의정자료를 국회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와 더불어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대한민국 의정정보 포털 사이트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 입법부의 입법활동 및 정책 추진상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입법지원 기관, 정당 등의 보도자료 제공
	입법지식서비스	○ 발간자료 및 의회정보데이터베이스와 외국정책사례, 싱크탱크보고서 등 입법과 정책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정보 포털 사이트

- 국회도서관 안내 책자에 따른 국회도서관 주요 서비스 중 법률정보서비스와 신착도서콘텐츠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표 III-21〉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및 신착서비스

구분		내용
법률 정보 서비스	법률정보조사회답	○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내·외 법률정보와 입법사례를 조사 검색하여 제공하고, 외국법률을 번역하여 제공
	외국법률 번역	○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외국법률을 번역하여 제공
	법률정보데이터 베이스	○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외국법률번역DB, 외국입법사례DB, 지능형 법률검색, 시 일본법 번역기)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	○ 국회도서관에서 구축한 각종 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와 법률정보기관의 법률 관련 콘텐츠를 연계하여 통합검색 제공
신착 도서 콘텐츠 서비스	금주의 서평	○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지식과 경험을 녹여 쓴 차별화된 서평으로 주 1회 발간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메일링 서비스, 알림톡을 통해 제공
	금주의 신간	○ 이슈가 되고 있는 신간을 안내하며 주 1회 게시하고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
	신간 단행본 안내	○ 국회도서관에서 입수한 국내·외 단행본을 국회 상임위원회 및 주제별로 구분하여 안내하며 주 1회 게시하고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
전자 도서관 서비스	전자 도서관 DB구축 및 서비스	○ 인쇄자료 및 디지털파일 형태로 입수되는 최신자료 등을 원문데이터베이스(Full-text DB)로 구축하여 제공 ○ 국회전자도서관, 협정체결기관(2022년 6월 기준 5,961개 기관) 및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원문정보서비스
	국회전자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열람신청원문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국회도서관에서는 법률정보조사회답, 외국법률번역 등의 법률정보서비스, 금주의 서평, 신간 단행본 안내 등의 신착도서콘텐츠서비스, 전자도서관DB구축 및 서비스, 국회전자도서관모바일서비스 등의 전자도서관서비스를 통해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음

나. 미국 의회도서관

(1) 기관 개요 및 선정 이유

- 미국 의회도서관은 1800년에 설립된 미국 국립도서관으로 의회 조사 서비스를 통해 수행되는 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연구가 주요 업무임

- 미국 의회도서관은 연구를 위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고위 공무원들과 도서관 직원들만이 도서와 자료를 대출 가능함

기관	한글	미국 의회도서관
	영문	Library of Congress
	지역	미국/워싱턴 D.C.
	홈페이지	https://www.loc.gov/
	주소	101 Independence Ave SE, Washington DC, DC 20540
	시설	Thomas Jefferson Building James Madison Memorial Building John Adams Building
서비스 형태	온라인(영어), 오프라인	
특이사항	의회도서관, 도서 목록 및 표준 참여	

(2) 미국 의회도서관 접근성 서비스

〈표 III-22〉 미국 의회도서관 접근성 서비스

구분	내용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 디지털 컬렉션, 오늘의 역사, 전시회, 내셔널 주크박스, 전국 도서 축제, 역사적인 신문, 가게, 시와 문학, 국립상영실, 어린이를 위한 미국 이야기, Read.gov
정보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 참전용사 역사 프로젝트, 시문학프로그램, 전시회 및 투어, 콘서트 및 공연, 코스 및 워크숍, 영화 및 비디오 상영, 강의 및 심포지엄, 회의 및 콘퍼런스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 협력 목록 작성 프로그램(PCC), 서지 레코드 협력 프로그램(BIBCO), 프로그램 및 주제 기관 협력 프로그램(SACO)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서비스	○ 다양한 SNS 운영(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핀터레스트, 플리커, 인스타그램, 아티즌즈유, 팟캐스트, GitHub, 언플래쉬), 모바일 앱, 이메일 뉴스레터

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 기관 개요 및 선정 이유

- 일본의 입법부인 국회에 속하는 국가 기관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회도서관으로 일본 국립도서관 기능도 하고 있어 행정 사법

부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함

기관	한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영문	National Diet Library, Japan	
	지역	일본/도쿄, 간사이	
	홈페이지	https://www.ndl.go.jp/	
	주소	1-10-1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8924, Japan	
	도쿄본관 시설	본관 2F: 과학기술경제 정보실, 인문종합 정보실, 제1열람실	
		본관 3F: 고전적(고문헌)자료실, 제2열람실, 도서별실	
		본관 4F: 지도실, 헌정 자료실	
신관 1F: 음악영상 자료실			
신관 2F: 신관 열람실, 잡지별실			
신관 3F: 의회 관청 자료실			
	신관 4F: 신문 자료실		
서비스 형태	온라인(일본어), 오프라인		
특이사항	국립도서관, 의회도서관		

(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접근성 서비스

〈표 III-23〉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접근성 서비스

구분	내용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디지털화,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제국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일본 법령 색인, 국립국회도서관 인터넷 자료 수집 보존 사업(WARP), 국립국회도서관 서치, NDL Online,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역사적 음원(레키온), 국립국회도서관 선거데이터 검색제공서비스, 보고서간행물, 커런트 어웨어니스 포털, 전자전시회, NDL이미지뱅크, 전자 저널전자책 찾기, 재팬 서치,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히나기쿠), 조사 및 입법조사국 간행물, 일본 법령 색인
정보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어린이도서관)어린이책 뮤지엄, 계절/테마별 소규모 전시, 조사학습 체험 프로그램, 참가형 워크숍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도서관 등의 지원협력(연수 및 정보 제공), 해외 도서관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국제도서관연맹 등 국제적 활동 참가), 정보자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제공(다양한 데이터 연계 플랫폼 제공)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튜브 채널 운영(온라인 이벤트, 채용 홍보 영상, 원격 연수 등 제공)

2. 사례 기반 시사점

〈표 Ⅲ-24〉 사례 기반 시사점

구분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정보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협력	매체 활용 홍보 서비스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DB구축/서비스	지식문화 프로그램 운영	법률정보기관 교류협력사업	대학생 SNS 서포터즈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참전용사 역사 프로젝트	협력 목록 작성 프로그램(PCC)	이메일 뉴스레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조사학습 체험 프로그램	국내 도서관 등의 지원·협력 (연수/정보 제공)	유튜브 채널 운영



구분	시사점 도출
지식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확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형성	법률기관, 지역도서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에서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디지털화 및 컬렉션 제공

3. 법률 문화 확산을 위한 접근성 확대 방안

가. 법률지식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각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강연과 실전 사례 연구를 통해 실용적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1) 오픈 세미나 및 워크숍

- (법률 기초 오픈 세미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기초 지식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법적 용어 해설, 법의 구조와 체계 소개 등을 포함
-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예시 제시

- (법률 분야별 워크숍) 특정 법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
- 수사법, 형사법, 상속법,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에 대해 전문가들이 강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법률 적용 방법을 학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2) 법률정보 활용 워크숍

- 법률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
- 법률 정보원과 검색 도구에 대한 안내와 활용법을 소개하고, 법률 정보검색 및 해석의 기술을 실습
-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에서 법률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나.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업 추진

- 해외의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교육, 연구 프로젝트, 국제 학술 대회 개최 등을 추진
- 법학과, 법학 연구소, 국제 법률 연구 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문적인 교류와 연구 협업을 진행

다. 파트너십 및 협업 프로젝트 추진

(1) 파트너십 구축

- 법률 관련 단체, 기관, 대학 등과의 파트너십을 형성
-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 자원, 네트워크를 공유

(2) 외부 전문가 초청

-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 세미나, 특강 등을 개최
- 외부 전문가와 이용자들 간의 교류와 지식 공유를 활성화

(3) 협업 프로젝트

- 법률 관련 분야에서의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함
- 다양한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상호 학습과 협력을 도모
-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대외적인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식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업계 이벤트 및 네트워킹 행사 참여

- 관련 업계의 이벤트, 콘퍼런스,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킹을 활발히 시도
- 법률 관련 전문가나 기업, 단체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서로의 비즈니스, 연구, 교육 등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

마. 디지털 아카이브

- (소장자료 디지털화) 소장자료와 법률문서, 판례 등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료의 접근성을 확대함
- (주제별 컬렉션 제공) 법 또는 분쟁과 관련된 주제별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의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형식 지원) 찾고자 하는 법률정보를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 각각의 선호하는 형식에 맞춰서 법률정보를 소비하고 활용함

바. 전자도서관 DB구축 및 서비스

- (비대면 정보 제공)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지리적 제약 없이 법률전자도서관의 검색열람신청·원문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전자기기에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책 형태로 제공 가능

사. VR(Virtual Reality)전시관

- VR(Virtual Reality)을 활용한 가상 전시공간을 통해 법률 전문도서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전시물, 체험물 등을 실감 나는 전시회장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음
- (유의미한 정보 수집) SNS와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 수집 가능
- (이용자 참여 유도) 작품을 관람하기만 하는 기존 전시관과는 달리 이용자가 가상 공간을 직접 탐험하고, 작품과 적극적인 상호작용 가능
 - 이용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작품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작품 보존) 이용자가 가상 공간에서는 전시물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어 작품이 훼손될 문제가 없음
 - (법정 체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법정 내부로 들어가 실제 재판 절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실제 재판에서 사용되는 법정의 분위기와 절차를 가상현실로 재현하여 사용자가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음
 - (사례 연구 및 법률 시뮬레이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법률 사례를 시각화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사례를 해결하거나 법률적인 결정을 내리는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아. 사법부 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

-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에서는 국민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해 사법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률정보조사 회답, 국외정보 번역, 팩트북 및 발간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미국 UCLA 법학전문도서관은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참고정보서비스와 참고자료 이용실을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들이 특정한 자료의 서지사항을 찾고, 적절한 법적 출처를 식별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도서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및 수집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함

자.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및 도서추천서비스

-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및 도서추천서비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정보 및 도서추천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계속해서 정교한 정보 추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법률지식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 영역을 자동으로 확장

차.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 (모바일 앱 구축)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보 검색) 이용자가 특정 주제나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법령, 판례, 규정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
- (최신 이슈 제공) 최신법 개정 내용, 판결 결과 등과 같은 최신 소식 및 업데이트 정보를 유지하고 공유하는 역할
- (커뮤니티 기능) 홈페이지 내 이용자들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장을 구축해 법률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공유, 다양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접근률을 높임

제3절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보존 기능 강화 운영 방안

I. 자료의 보존

구분		내용
자료 보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자료의 오염, 파손 등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보존을 가능하게 함
	물리적 보존 환경 개선	○ 자료의 보존을 위해 적절한 온도, 습도, 조명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보존 장소의 안전성을 강화하며 미생물 및 해충을 점검하고 소독을 통해 사전예방, 이를 통해 자료의 변형이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음
	전자매체 보존 처리	○ 오디오, 비디오 매체전환 및 LP,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의 세척 등 보존처리를 통해 전자매체를 장기적으로 보존
	보존기술 연구	○ 보존회의록, 의안문서, 행정문서, 도면, 카드, 전자문서, 사진기록, 영상기록, 음성기록, 행정박물류, 간행물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의 특성 및 성질 분석을 통해 형태별 보존방안 마련

1. 자료 정리 및 보존 사례

가. 고려대학교 법학 아카이브

- 고대 법학의 역사 교육 및 디지털 혁명이 주도하는 현대 시대에 맞는 보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카이브를 구축
- 법학전문대학원 국문브로셔, 인터뷰 자료, 학교 건물의 역사 등 다양한 자료를 아카이브하여 이를 위한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

〈표 III-25〉 고려대학교 법학 아카이브

구분	내용
보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 캠퍼스 관련 사진 및 수채화 자료 ○ 법학 동문 인물 관련 정보 ○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강연 자료 ○ 원장 및 관련 인물 인사말 ○ 법학대학 발간지 및 정기간행물

구분	내용
보존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발췌 및 보존 ○ 동영상 자료 링크 및 영상 제공 ○ 행사자료의 경우 국문과 영문 내용으로 발췌하여 보존

나. 고려대학교 법학 보존서고

보존서고 활용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응하고, 자료를 보존하여 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이바지

(1) 목적

-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자료 수용능력 강화를 통해 도서관 업무수행 효율성 촉진

〈표 III-26〉 고려대학교 법학 보존서고

구분	내용
소장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이전 출판된 법학분야 단행본(동양서, 서양서) ○ 참고도서 및 법학분야 지정도서 ○ 1999년 이전 서양서 연속간행물 ○ 전체 동양서 연속간행물
이용가능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열람 및 출력 서비스 ※ 가방 소지 불가(법학도서관 내 사물함 보관 후 입장 가능) ○ 검색, 복사, 자료열람 서비스 제공

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입법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회의 의정활동을 총체적으로 기록화

(1) 목적

- 지식 자원화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의회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

〈표 III-27〉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구분	내용
전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기록물 수집·관리·서비스 제공의 내실화 ○ 국회기록정보 확대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국회기록물의 다각적인 수집을 통한 의정사료의 보고(寶庫)화 ○ 기록관리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 국회기록물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접근성 강화 ○ 영구기록물의 과학적 관리·보존 체계 구축
업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감독 ○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 국회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문서 - 국회간행물 - 국회의안 - 국회회의록 ○ 기록정보콘텐츠 ○ 임시의정원 아카이브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2. 자료의 정리 및 보존

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자료의 오염, 파손 등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보존을 가능하게 함
- 귀중본, 오래된 신문 등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복제하며 마이크로필름 수세처리, 퇴감기 등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해 원본자료의 훼손을 예방함
- 장기 보존 데이터의 논리적·물리적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어 자료의 신뢰성 및 진본성을 확보 할 수 있음
- 종이 문서의 디지털화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 온라인서비스 선호도가 높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종이기록물과 사진과 필름 등의 시청각기록물을 스캐닝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영구매체로 저장 후 보존처리해 자료의 영구보존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디지털 아카이브로 축적된 자료는 후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 가능. 참고 사례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메모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전자도서관’이 있음
- 뉴욕시 공연 예술 도서관은 연극 영상 아카이브로 2014년 이후 기존 비디오 녹화본을 DVD로 변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디지털타이징 작업을 진행중임(임호균, 2018)

나. 물리적 보존 환경 개선

자료의 보존을 위해 적절한 온도, 습도, 조명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보존 장소의 안전성을 강화하며 미생물 및 해충을 점검하고 소독을 통해 사전예방. 이를 통해 자료의 변형이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자연적 열화나 인위적 파오손에 따른 사후 수선복원보다 자료소독 등의 사전 예방조치를 우선하여 자료의 훼손율을 줄일 수 있음
- 법원도서관의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자료의 형태 서지적, 내용적 측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보존·복원처리, 소독·탈산처리, 매체변환을 통하여 보존과 이용자들의 접근·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관련 기관에 분산 보관을 기해 수해·화재·멸실 등 재난에 대하여 대비. 폐기 및 제적 기준을 마련하여 보존자료 공간 부족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자료보존서고 온습도 및 유해가스 등 보존환경 측정을 통해 보존서고 환경분석을 하여 자료의 물리적 훼손을 예방할 수 있음

다. 전자매체 보존 처리

오디오, 비디오 매체전환 및 LP,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의 세척 등 보존처리를 통해 전자매체를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음

- 전자매체의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분석하며 오디오, 비디오 매체의 음성과 화질 등을 복원처리함으로써 비도서자료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음

라. 보존기술 연구

보존회의록, 의안문서, 행정문서, 도면, 카드, 전자문서, 사진기록, 영상기록, 음성 기록, 행정박물류, 간행물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의 특성 및 성질 분석을 통해 자료 형태별 보존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보존상자, 보존봉투, 배접지, 테이프 등의 보존용품의 보존성을 실험하고 고서, 고지도, 양지 등의 다양한 종류의 종이 섬유를 촬영하고 분석, 이를 통해 보존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유해 미생물 분석, 자료의 열화원인 분석, 자료 보존용 재료 분석을 통해 자료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보존장비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매체별 보존정책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자료에 적합한 방법으로 보존을 할 수 있음